

제434회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임시회) (조세소위원회)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6년4월10일(금)

장 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63)
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 의원·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26)
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02)
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54)
5.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55)
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11)
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15)

상정된 안건

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63) 1
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 의원·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26) 1
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02) 1
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54) 2
5.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55) 2
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11) 2
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15) 2

(10시02분 개의)

○소위원장 박수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4회 국회(임시회) 재정경제위원회 제1차 소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은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의 법률안을 심사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평소하고 똑같이 안건별로 수석전문위원 보고, 정부 측 의견 듣고 위원님들 질의 답변을 거친 후에 협의가 된 사항은 안건 심사 종료 후에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63)
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 의원·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26)
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02)

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54)
5.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55)
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11)
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15)

(10시03분)

○소위원장 박수영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7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최병권 수석전문위원께서 소위 자료 1번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소위 자료 1페이지입니다.

박수민 의원이 제출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재산권 등 보호대상에 방위산업기술 등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자료 2페이지입니다.

현황을 보시면 현행법은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물품에 대해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권리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물품에 대하여 권리자 요청에 따라 통관을 보류하거나 세관장 직권에 의하여 통관을 보류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방위산업기술, 산업기술, 영업비밀의 해외 유출을 국경 단계에서 차단할 필요성을 고려해서 지식재산권 등의 보호대상에 이를 포함하고 이를 침해한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거나 유치할 수 없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24년도 법률 개정을 통해서 지식재산권 등의 범위에 방위산업기술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본 개정안 내용이 일부 반영되었으므로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논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기술은 각종 법령에 따라 고시·인증·지정된 국가핵심기술, 첨단기술, 신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법령에서 정하는 기술을 포괄하고 있는데 그 종류 및 예시는 밑의 표와 같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관계부처 의견을 보시면, 동 개정안에 대해서는 24년도에 이미 조세소위에서 논의를 했습니다. 조세소위 논의에서 동 개정안에 대해서 산업부와 지식재산처는 신중검토 의견, 관세청은 동의 의견을 제시해서 부처 간 이견이 존재해서 24년도에 재정부에서 협의를 주재하기로 결론을 내렸으나 아직까지 협의가 완료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6페이지 결정사항 1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식재산권 등의 등록자 및 권리자에 대한 신고제도를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에도 적용할지 여부에 대해서 먼저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법상 지식재산권 등 침해물품에 대해서 관세청장은 관계법령에 따라서 지식재산권 등을 등록 또는 설정등록한 자 등으로 하여금 해당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사항을 관세청에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도 지식재산권 등의 범위에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을 추가함에 따라서 권리자의 신고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 의견은 산업기술이나 영업비밀에 대한 권리자 신고 규정과 관련해서 산업부·지재처·관세청의 의견은 동일하게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7페이지 상단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기존의 지식재산권과 같은 배타적 권리에 기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한 자 등으로 하여금 사전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산업기술이나 영업비밀에 적용하기에는 무리한 측면이 존재합니다.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은 그 특성상 외부 비공개 사항으로 관세청에 사전에 신고할 경우 정보유출 가능성이 있으며, 사전에 신고를 하더라도 침해 여부를 세관에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전신고제도 운용의 실익이 크지 않으므로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에 대한 권리자의 사전신고 규정은 배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결정사항 두 번째입니다.

통관보류 등 보호대상의 범위 결정에 있어서 개정안은 산업기술하고 영업비밀을 추가 하자는 것인데 정부 의견은 지식재산처에서는 영업비밀 추가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제시 하였고 다른 정부 부처도 반대의견에 동의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8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영업비밀의 정의상 그 대상 범위가 광범위하고 경쟁사 등의 악의적인 권리 주장과 요청의 남발 우려,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물품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역위원회의 요청으로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점, 국가핵심기술 등이 포함된 산업기술에 비해서 통관보류 등 급박한 조치의 필요성이 영업비밀의 경우에는 비교적 낮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소위에서는 우선적으로 산업기술을 보호대상의 범위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결정사항 세 번째는 통관보류 요청 주체 등의 범위에 대해서 결정하셔야 되는데요. 현행법상 지식재산권 등 침해물품에 대한 통관보류·유치는 권리자 등의 요청에 따라 또는 세관장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는데요.

9페이지 보시면, 첫 번째는 세관장이 수출입신고 물품 등의 지식재산권 등 침해가 인정될 때 그 지식재산권 등을 신고한 자에게 통보하면 통보받은 신고자는 담보 제공을 통해서 통관보류 및 유치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지식재산권 등을 보호받으려는 자의 담보 제공을 통한 통관보류·유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세관장 직권으로 통관보류·유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개정안에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을 추가하기 때문에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을 추가할 경우에도 신고자 등의 요청이나 세관장 직권에 따라서 침해물품 통관보류 등을 동일하게 적용받게 돼 있습니다.

정부 의견을 말씀드리면 지식재산권 등 침해의심물품의 통관보류에 대해서 산업부하고 지식재산처는 반대의견, 관세청과 국정원은 찬성의견을 표시하였는데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산업부는 산업기술 침해 여부는 세관 판단으로는 불가능하고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므로 산업기술 침해의심물품에 대한 통관보류를 허용할 경우 경쟁사의 견제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지식재산처는 영업비밀의 특성상 그 내용·범위가 공개되지 않고 해당 물품에 영업비밀

이 적용되었는지 여부의 판단에 고도의 기술적·법적 전문성이 요구되는 만큼 지재처 기술경찰 등 전문기관의 판단을 거치지 않고 일방의 주장에 따른 통관보류 시 수출입업자의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주었고.

관세청은 국정원 등 수사정보기관에서 기술유출 등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더라도 통관보류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세관에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어 수출입 단계에서 제보에 따른 최소한의 사전 차단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주었습니다.

국정원은 첫째, 일단 국경을 넘은 기술유출은 원상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사후 형사처벌·손해배상으로는 유출된 기술의 경쟁 우위 상실을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국경 단계의 사전 차단이 유일한 실효적 보호수단이라고 보았고요.

둘째, 산업기술보호법 등에서 기술유출의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존재하지만 국경 단계의 물리적 통제수단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아 통관보류의 근거를 마련하는 관세법 개정안은 새로운 규제 창설이 아닌 기존 보호체계의 실효성을 보완하는 방안으로 법체계의 내적 정합성을 강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핵심기술 및 기업 영업비밀 유출방지를 위한 수출입 단계에서의 단속의 중요성은 인정됩니다. 하지만 산업기술의 광범위함과 영업비밀의 기밀성 등의 특성에 따라서 현행 수출입 단계의 통관보류 규정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보았고요.

그리고 통관보류 적용을 위한 물품의 산업기술·영업비밀 침해 여부의 판단은 고도의 기술적 검토가 필요한 만큼 권리를 신고한 자의 요청 또는 세관장 직권에 의한 통관보류를 허용할 경우 경쟁사의 악의적인 요청 등으로 자유로운 무역이 저해되거나 수출입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개연성이 존재합니다.

다만 국정원 등 정보수사기관 또는 산업부 등 국가기관이 수출입 단계에서 산업기술 등 침해의심물품을 차단할 필요에 따라서 세관장에게 통관보류를 요청하는 경우에만 세관장이 통관보류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부여하는 방안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최근 5년간 기술 유출수단 분석 결과를 보면 USB(외부저장장치), 출력물 등 유형매체 소지를 통한 유출이 45%를 차지하고 있어 이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서는 정보수사기관 등 국가기관 요청에 따라 출입국자 검사 등 권한이 있는 세관이 통관 단계에서 산업기술이 담긴 유형매체 등의 반·출입을 차단할 필요성이 존재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국가핵심기술 및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로 인한 경쟁 우위 상실은 국가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정원, 산업부 등 산업기술 유출방지 업무를 수행하는 정보수사기관을 포함한 국가기관에서 산업기술 등의 유출 위험성에 따라서 통관보류를 요청한 경우에 한정해서 통관보류를 적용하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세 가지 검토에 따라서 수정의견을 말씀드리면 영업비밀을 제외하고 산업기술에 한정하여 지식재산권 등의 보호 범위에 포함시키고, 산업기술의 경우에는 등록·권리자의 신고제도 및 세관장 직권에 따른 통관보류를 적용하지 않고 국정원, 산업부 등 국가기관

의 통관보류 요청에만 관세청이 산업기술 침해가 의심되는 물품을 통관보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차관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수석전문위원께서 자세하게 검토를 해 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24년에 개정을 통해서 방위산업기술이 추가된 이후에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사항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말씀드리면 사전에 신고할 필요가 있느냐는 부분은 저희도 수석전문위원님처럼 이 2건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2번과 3번, 보호대상에 넣고 누가 이걸 결정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업비밀의 경우에는 범위가 굉장히 불명확하고 광범위해서 지금 당장 법규로 규정하기에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산업기술의 경우에는 오늘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수석전문위원의 제안처럼 산업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로 한정을 한다면 산업부에서 우려하는 여러 가지 부분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저희가 산업부에서 완전한 동의를 못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늘 산업부도 출석을 해 있습니다만 소위원님들과 함께 논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국정원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저희는 국정원이 별도로 개별 조사하기보다는 산업부장관이 요청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정부 내 협의를 거쳐서 산업부장관이 대표로 관세청에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산업 관련 기술법에도 산업부장관의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이걸 일원화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국정원도 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국정원법에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국정원법에 있잖아요. 그런데 산업부만 있다고 하시는 건 사실이 아닌 것 같아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저희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그 법규상 산업부장관에게 권한이 있고 그것에 따른 산업기술을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썼는데요. 국정원 관련된 규정은 좀 더 논의는 있을 수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국정원법에도 그 규정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수석전문위원 말씀이.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예,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그러면 산업부 의견 들어 보기 전에 위원님들이 의견을 먼저 주시고 그다음에 산업부 의견도 한번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산업부하고 관세청도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오기형 위원님.

○오기형 위원 기본 검토의견이 맥락을 잘 정리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그중에 일단 영업비밀이 실제 너무 광범위해서 산업기술로 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런 경우에 상대방 입장에서 이게 나중에 다룰 여지가 있느냐에 대한 절차적인 것들은 지금 현재 확보돼 있는지 추가 설명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산업부 장관이 이걸 요청하면 정지시킬 수 있는 거지요? 그러면 정지시키는데 실제 그 판단이 옳았냐 틀렸냐를 다른 기업, 실제 수출하려고 했던 기업 입장에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그 프로세스가 있느냐 이것만 좀 보충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재정경제부관세정책관 최재영** 관세국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실에 대해서는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기업이 세관장에다가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절차가 있고 또 통관을 시키기 위해서는, 통관이 빨리 필요하다 하는 경우에 담보를 제공하고 통관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제도들은 구비가 돼 있습니다.

○**산업통상부기술안보과장 유은** 위원장님, 산업부에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들이 다 8호는 제외한다라고 해서 산업기술에 대해서는 제외하는 규정으로 되어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산업기술, 특히 국가핵심기술 유출 여부에 대한 판단이 법원에서도 굉장히 오래 걸리는 사항입니다. 진짜 유출됐는지 안 됐는지 판단이, 삼성전자가 중국에 유출된 사건 1심만 해도 7년이 걸렸거든요. 그때 산업부 장관이 혹시 관세청장한테 그런 요청을 드렸고 그리고 수출입통관을 보류 잡힌 화주가 관세청장한테 ‘담보를 제공하고 나를 풀어 주세요’라고 한들 그걸 누가 풀어 줘야 되는 건지, 계속 통관보류를 유지해야 될 건지를 판단할 수 있을까? 그건 계속 법적 다툼의, 분쟁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아무리 산업부 장관의 요청이라고 할지언정 타당한지에 대한 건 저희가 좀 의문인 상황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일영 위원님.

○**정일영 위원** 간단한 것 하나 물어볼게요.

이게 내용이 굉장히 복잡하고 정부기관들도 입장이 막 다르고 그런데요. 수석전문위원이 보고한 마지막 수정의견에 대해서 재정부차관님 입장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걸 수용하는 거예요, 뭐예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저희는 이 대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사항인데요. 문제는 실제 산업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논의가 아직 정리 안 된 상황입니다. 저희는 이 대안은 수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정부 입장에서는 수정의견을 받아들일 수가 있단?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예, 산업부 장관의 요청이 있다면 가능해 보입니다.

○**정일영 위원** 그런데 산업부가 걱정이 된다?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예.

○**정일영 위원** 그러면 정부 내에서 경제부총리가 정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한 번 회의를 했었는데 그때 조정이 안 돼 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정일영 위원 차관님 경제부총리 대신해서 힘이 좀 약하네. 경제부총리인데 딱…… 정부 입장이 정리가 돼야 논의를 해서 여기서 정리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산업부는 계속 재정부 의견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산업통상부기술안보과장 유은 저희가 굉장히 여러 가지 근거를 갖고 반대의견을 제시를 드렸고 행정실에다가도 자료도 드리고 말씀도 드렸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누락시키고 사소한 것만 여기 산업부 의견이라고 적어 주셔서……

○정일영 위원 제일 중요한 게 뭔데요, 이 수정의견을 받아들였을 때?

○산업통상부기술안보과장 유은 저희는 일단은 이 개정의 실익이 너무 없고 오히려 부작용만 유발되는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일영 위원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산업통상부기술안보과장 유은 실익이 없는 첫 번째 이유는 산업기술 침해하여 만든 물품의 수출입통관을 보류하는 거랑 산업기술이 유출된 거랑은 별개입니다. 산업기술이 이미 유출된 후에야 통관보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개정안의 목표가 유출방지를 위해서 물품의 통관을 잡겠다는 거거든요. 이미 유출이 끝난 다음에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산업기술을 보호하고 있는 양태와 관련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품을 뜯어서 기술유출이 가능한 것들은 기업에서 지재권으로 보호를 하고 있고요 아무리 뜯어봐도 그게 어떤 기술을 썼는지 모를 것들은 영업비밀의 형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재권인 경우에는 이미 235조에 의해서 통관보류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영업비밀의 경우에는 행정실에서도 검토했듯이 통관보류 대상으로 하기는 옳지 않은 것이고. 그렇다면 지재권 내지 영업비밀로 관리 중인 산업기술이라는 것을 여기 235조에 굳이 쓸 실익이 없다.

그리고 세 번째 실익이 없는 사유는 심사자료 결정사항 3번의 마지막 부분에 USB나 출력물을 들고 출국을 하려는 자를 통관에서 잡는 실효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이미 출입국관리법에 의해서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USB만 잡는 게 아니라 사람 자체를 못 나가게 합니다. 이미 출입국관리법에 의해서 그런 것들은 단도리 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실익이 없는 이유는 행정실 수정안에 따르면 다른 기업이나 다른 사람들이 신청할 수 없게 하고 산업부장관이나 국정원장의 요청에 의해서만 중단을 하게끔 하신다고 좁혀 봤는데 이미 관세법 237조에 의해서 다른 정부부처의 요청에 의해서 통관을 잡는 것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왜 부작용이 우려되냐라는 측면에서 보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통상 분쟁의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토의견 작성해 주신 것들 중에 결정사항 2의 18번 각주를 보시면 영업비밀에 대해서 이러한 사유 때문에 통관보류 대상에 넣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검토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영업비밀’을 ‘산업기술’이라고 바꾸면 똑같은 논리가 적용이 되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독점적·배타적 권리가 아닌 산업기술의 경우에는 침해에 대한 증거가 그 물품의 확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침해가 된 행위로 만들어졌냐에 대한 것을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증거가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산업기술 침해물품이, 우려된다는 걸로 통관보류가 일어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

고요.

그래서 국제적으로도 독점적·배타적 권리가 인정된 지재권에 한정해서, 왜냐하면 그것은 비교적 침해했는지 안 했는지를 잘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한해서 통관보류하는 것을 인정하고 기술유출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술 수출통제체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세법 235조가 이렇게 수정이 됐을 경우에 거의 국제적으로 전례 없는 입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출에 대한 통관도 보류되지만 수입에 대한 통관도 보류되는 상황에서 수입에 대한 비관세 장벽으로 문제 제기가 될 소지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결정사항 2에 지재처에서 제시한 것도 산업기술에 똑같이 적용이 됐는데 통관보류를 하게 되면 관세청장이 화주, 수출입신고자한테 ‘너의 물건이 통관보류가 됐어’라고 즉각적으로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설사 그 사람이 진짜 산업기술을 침해해서 만든 제품을 수출하려고 하는 자라면 우리가 그동안 증거를 인멸해 줄 시간을 그 유출범에게 벌여 주는 꼴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35조에다가 산업기술을 넣는 게 실익이 없을뿐더러 부작용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예, 잘 알겠습니다.

○정일영 위원 이제 시원해요? 할 얘기 다 했어요?

○산업통상부기술안보과장 유은 죄송합니다, 너무 많이 말씀드려서.

○소위원장 박수영 국정원은 안 나왔고 관세청은 나와 있으니까 이제 반대되는 관세청 얘기를 듣고, 박성훈 위원님과 안도걸 위원님 발언 신청하셨으니까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세청 이어서 한번…… 직·성명부터 말씀하시고.

○관세청조사총괄과장 최문기 관세청 조사총괄과장 최문기입니다.

국경 단계에서 국가핵심기술이 유출되는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다 동의를 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산업부와 이견이 있는 것처럼 보일까 봐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산업부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산업기술 침해물품은 이미 유출된 후에 통관보류가 이루어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산업기술 침해가 된 물품이 나가기 직전에 통관보류를 통해서 임시적으로 국경 단계를 벗어나는 것을 막자는 것이 이 법의 제도 취지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은 조금 다른 국면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산업기술의 보호 양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눈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지재권으로 보호하고 있고 나머지는 영업비밀로 보호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 이분법적인 도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산업기술 보호 양태에 대한 다양한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두 가지로 단정적으로 나뉘서 생각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출력물이나 USB로 해서 나가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상에 개인을 통제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고 했는데 개인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그 개인이 영업비밀을 들고 나간다, 산업기술에 대한 부분을 들고 나간다 하는 어느 정도 확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확증을 가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관세법은 사실 국경을 출입하는 물건에 대한 검사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개인의 여행권 전체를 제한할 필요 없이 그 사람이 어떤 부분들을 몸에 지니고 있는지에 대한 검사권을 통해서 충분히 더, 최소침해에 따라서 차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광범위한 것보다는 최소침해하는 것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아까 237조 수출입 관계법령에 따라서 산업부장관이 수출 중단을 요구하실 수 있다고 했는데 사실 산업기술 유출법은 수출입 관계법령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허법이나 아니면 지재권법 등에서도 수출을 금지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관세법 235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상 분쟁이 조금 문제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건은 첨단산업기술이 집계된 모든 물품을 통관보류하자는 것이 아니라 산업기술이 불법적으로 유출되는 침해물품에 대해서만 통관보류를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 이견은 이해가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산업기술 유출법 15조에 보면 산업기술이 유출될 우려가 있거나 아니면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부장관과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보고받은 산업부장관과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사 결과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는 부분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산업부 의견에 동의를 해서 이번 수정의견처럼 산업부나 아니면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이 15조에 따라서 침해 사실에 대해서 충분히 조사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했을 때 마지막 국경 단계에서 저희가 차단을 임시적으로 하겠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아마 TRIPs라는 지식재산권 무역협정을 자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협정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유효하지만 지금 현재 국면은 지식재산권을 벗어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TRIPs에 한정해서 이상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주에게 통보된 경우에는 이미 증거가 인멸되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정보수사기관의 장이나 산업부장관이 조사를 거친 다음에 저희한테 통보가 오는 것이고 저희가 긴급하게 통관보류를 해야지만이 경찰이나 그 이후 수사기관들이 통관보류된 상태에서 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에도 반드시 필요한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신청하셨던 박성훈 위원님 제일 먼저 시작하시겠습니다.

○박성훈 위원 저는 개별적인 사안 하나하나를 두고 말씀드리기보다 조세소위를 하면서 각 관계부처가 이렇게 참여하게 이견을 제시하는 경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정부 내에서도 보게 되면 재정부 내에 정책조정 기능이 있고 국무조정실에 부처 간의 이견을 조율하는 프로세스가 충분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런 과정 없이 조세소위에 각 부처가 나와서 이렇게 이견을 제시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로 이 사안 같은 경우는 구체적 케이스로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과 우려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법을 충분히 논의하고 결론을 내리기에 아직 너무 이르지 않나. 그래서 저는 이 단계에서 좀 보류를 시켜 놓고 먼저 정부 내

에서 조율이 이루어지는 게 우선시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안도걸 위원님.

○안도걸 위원 산업부에 여쭙볼게요.

제7조(잠정조치)에 따라 무역위원회에서 유사한 행위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관세청이 하고자 하는 그러한 조치가 무역위원회의 조치로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거기 보면 잠정조치에 무역위원회가 산업기술이라든지 영업권이 유출되는 행위가 발생하면 해당 행위자에 대해 수출·수입·판매·제조 중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수입·수출 중지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에 따라서 관세청의 어떤 조치가 따라옵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영업권을 침해해서 물건을 만들어서 수출하려고 그래, 그러면 무역위원회에서 ‘이것은 안 됩니다. 잘못됐습니다’라고 하면 이 결과가 관세청으로 가 가지고 관세청이 그에 근거해서 조치를 할 수 있나요? 통관 제한조치를 할 수 있나요?

○관세청조사총괄과 전두한 관세청 조사총괄과 전두한 서기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불공정무역 조사 여부는 불공정무역행위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불공정무역조사법에는 산업기술보호법 자체가 빠져 있습니다. 따라서 불공정무역조사법에 의해서 요청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이걸 할 수 있는 법적 권한 자체가 지금 현재는 없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7페이지 각주 19번 4조 1항 1호를 보시면 잠정조치할 수 있는 대상이 나오는데요. 거기에는 반도체직접회로의 배치설계권 이 부분만 산업기술이고요 대부분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물품이기 때문에 여기 산업기술은 대부분 포함이 안 됩니다.

○안도걸 위원 이것으로는 안 된다고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예, 산업기술이 포함이 안 됩니다.

○산업통상부기술안보과장 유은 죄송한데 제가……

○소위원장 박수영 잠깐만요, 위원님 질의하고 계시니까.

○안도걸 위원 지금부터 산업부에 여쭙게요.

제가 이제 관세청 이야기를 들어 보고 양쪽 이야기를 들어 보면 산업부 입장에서는 관세청이 하고자 하는 통관 단계에서의 통제에 대해서는 이게 불필요하다 그리고 효과가 없다고 하는 건데, 이것 다층적인 것 아닙니까? 우리가 다층적인 통제를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기술을 사람이 직접 들고 나가는 등등 그것은 기술유출을 막아야 되겠지마는 물건에 탑재돼 가지고 나가는 것 그것은 또 이쪽에서 막으면 될 것 아니겠어요? 왜 그것을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가요?

○산업통상부기술안보과장 유은 산업부 기술안보과장 유은입니다.

저희가 산업기술 보호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로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누구보다, 어느 부처보다 우선적으로 산업기술 유출이 방지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제품을 까서 기술이 추측될 수 있는 항목들은 수출이 된다고 해도 지재권으로 다 보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수출통관을 막는 것과 기술유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반도체를 엄청 많이 수출한다고 그 수출로 인

해서 반도체 기술유출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같은 이치입니다.

이 개정안의 효과를 따져 보자면 기술유출 범위, 실제 개별 수출해서 얻는 경제적 이득을 방지하는 그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산업기술보호법상 이미 다 조치가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부작용을 감수하면서까지 관세법에 추가로 넣을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안도결 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지재권은 그렇게 되지만 그게 드러나지 않는 무형적인 산업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침해 가능성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기존의 지재권 그걸로는 못 막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 관세청이 들여다볼 수도 있겠고. 그런데 관세청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또 제3자가 자기 개인적인 목적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산업부하고 국정원에서 판단을 해서 이것은 분명히 산업기술이라든가 영업비밀이 침해되는 내용인 것 같다, 그런 내용들이 탑재돼 가지고 여기서 나가는 것 같다고 하면 그것을 막으면 될 거 아니겠어요?

○산업통상부기술안보과장 유은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영역이 영업비밀로 관리되고 있는 산업기술입니다. 그래서 실제 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형사소송에서 판례를 보면 다 산업기술보호법 위반과 영업비밀, 거기 다 같이……

○안도결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재권으로 보호받지 않고 있는 분야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지금 관세청이 잡겠다는 거잖아요?

○산업통상부기술안보과장 유은 그것은 행정실 검토의견에서도 영업비밀을 수출입통관 서류 대상으로 넣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검토를 이미……

○안도결 위원 아니, 그런데 봐 보세요. 그 이유 중의 하나가 무역위원회에서 이런 조치를 통해서 영업권 침해에 대해서는 막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했지만 당장 아까 들여다 보니까 그것은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산업통상부기술안보과장 유은 저희 산업기술보호법상도 기술유출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기술유출자로 의심되는 자에 대해서 수출 불가 이런 명령을 다 내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명령에 따라서 관세청에 요청을 하면……

○안도결 위원 그러니까 이게 부처 간 약간의 업무 영역 싸움입니까?

○산업통상부기술안보과장 유은 아닙니다.

○안도결 위원 제 생각에는 그렇거든요. 총괄적인 것은 산업부가 알아서 하되 통관 단계를 규율하는 관세청은 또 그 단계에서 하나의 수단을 가지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다른 수단하고 중첩이 되거나 이러면 안 되겠지요. 그렇지만 이 자체가 하나의 유효한 통제수단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활용하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굳이 이유를 들고 들어서 그것을 무력화시키려고 그러세요?

○산업통상부기술안보과장 유은 아니요, 영역 다툼이 아니라요 산업기술보호법상 ‘통관을 잡아 주세요’라는 요청을 관세청한테 할 수 있기 때문에 관세청이 237조에 따라 그것을 수용만 해 주시면 되는 사항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과장님, 됐고요. 충분히 답변하신 것 같고 아까 했던 얘기 또다시 나오니까.

최기상 위원님 질의부터 받아 보겠습니다.

○**최기상 위원** 저도 법원에서 영업비밀·산업기술 관련한 판단이 참 어렵고 복잡하다는 경험을 한 바가 있고요. 이 부분 지금 관계부처 말씀이 다 일리가 있는 상황이니 조금 시간을 갖고 검토를 더 하시기를 정부 측에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특별히 산업부에 말씀드리면 기재위 행정실에서 만든 이 보고서 내용이 매우 충실하고 이해가 잘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쉬움을 좀 덜고 가시기를 바라네요.

○**소위원장 박수영**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원래는 경제부총리가 정책조정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정을 해서 와야지 이렇게 부처 간 이견이 있다고 부처를 다 불러들이면 이거 어떻게 짧은 시간 안에 조정을 하겠습니까. 재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조정을 해야 될 것 같고.

다만 이게 부처의 영역 싸움으로 가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그것은 안 됩니다. 영역 싸움이 아니라 우리 기술을 어떻게 보호하느냐에 초점을 두고 지금으로 충분하냐 아니면 추가로 또 필요하냐 이런 각도에서 봐 주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정태호 간사님 마지막 발언 신청 또 하셨습니다.

○**정태호 위원** 이 문제는 작년에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한번 논의가 됐었는데 그때도 똑같은 논쟁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한 6~7개월 지났는데도 아직 정리가 안 되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것을 해결 못 하면, 정리를 못 하면 국회가 정리를 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음 소위가 열릴 때까지는 정부가 정리해서 오세요. 안 그러면 우리 소위에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소위원장님, 이게 2024년도에도 똑같이 이렇게 논의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2년이 흘렀는데 이렇게 정리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보다 강력하게……

○**소위원장 박수영** 그러니까 마지막 기회를 정부 측에 드리는 것이고 그게 안 되면 다음 소위에서는 표결을 해서라도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에서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15페이지입니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대손금 요건 완화에 대한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대손금의 요건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그 요건을 완화하여 인정되는 범위를 넓히려는 내용입니다.

중간부에 보시면, 현재 외상매출금 등의 경우 민법상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돼서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 대손금으로 인정되나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은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등에 대해서는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경우 대손금으로 인정하도록 특례를 규정한 바 있습니다.

17페이지 보시면, 개정안은 이처럼 중소기업 특례 2년보다 더 완화를 하고 지금 시행령에 있는 중소기업 외상채권 2년 특례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면서, 개정안 박스 우측을 보시면 2년이 아니라 회수기한이 6개월 이상 지났으며 합리적인 회수 노력이 이루어졌음

에도 회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외상매출금에 대해서는 대손처리를 하도록 규정하는 개정안입니다.

18페이지, 정부 및 관련 단체 의견을 보시면 재정부의 의견은 생략하고, 중소기업중앙회 의견은 중소기업의 매출채권 현금화 기간은 평균 42.4일로 나타나 현행 대손처리기한 2년은 중소기업 영업 현실과 큰 차이가 있다는 점, 대손처리기한이 단축되면 회수불능채권을 더 신속하게 비용처리할 수 있으며 현금흐름 개선을 통해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손처리기한을 현행 2년에서 6개월로 단축함으로써 조기 대손처리가 가능하고 이를 통하여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의 세부담 완화가 가능한 걸로 보았고요.

둘째, 개인사업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부실채권을 신속하게 대손처리할 수 있어 거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19페이지, 다만 다음과 같은 상황을 고려해야 되는데 첫째, ‘합리적인 회수 노력이 이루어졌을 것’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어 그 회수 노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측면이 존재할 걸로 보았고요.

둘째, 회수기일에 대한 요건을 2년에서 6개월로 완화하는 경우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대손처리기한 2년과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존재합니다.

다만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의 대손금 요건 2년은 소상공인 입장에서 지나치게 길어 그동안 대손처리를 하지 못해 불필요한 세부담을 야기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2024년 기업생멸행정통계에 따르면 신생기업의 1년 생존율은 64.4%이고 2년 생존율은 54%입니다. 약 35% 이상의 신생기업이 1년 내에 폐업하고 46%의 신생기업이 2년 내에 폐업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현행 법령상 2년이라는 대손처리기한에 따르면 2년 이내에 폐업하는 신생기업의 경우 대손처리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해 불필요한 세부담을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들의 매출채권 현금화 기간은 평균 42.4일임을 고려할 때 회수기한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은 사실상 회수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회수기한을 완화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를 감안할 때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의 대손금 요건 2년은 영세한 소상공인 입장에서 지나치게 길어 그동안 대손처리를 하지 못해 불필요한 세부담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를 1년 정도로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우선 회수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는 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수석전문위원님 말씀처럼 채권 회수 노력을 합리적으로 충분히 했느냐와 관련해서는 판단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현실로 가 보면 대체로 6개월이 지나면 다 조세를 아끼는 행위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큼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회수 노력

이 좀 결여될 수 있거나 또 회수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먼저 대손처리를 함으로써 세수가 결국에는 조세를 회피할 수 있는 수단으로 현실에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커 보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3년이지만 특별히 중소기업에서 2년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현행 제도를 그냥 유지하는 게 저희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영세 소상공인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고려를 할 수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은 어떤 세무처리가 돼 있냐 하면 회계장부를 구성하지 않고 그냥 총수입의 일정 비율을 바로 경비로 떨어 버리는 단순경비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음식점이나 숙박점 같은 경우는 한 85%를 그냥 떨어 줍니다, 이런 장부 구성 없이. 그렇다면 이런 분들은 이 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분은 오히려 그냥 현재 제도로도 85%를 떨어 수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실익에 대한 게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합리적인 회수 노력에 대한 객관적 판단이 어렵다는 부분은 결과적으로 보면 수석전문위원님 말씀처럼 결국에는 납세자와 국세청 간의 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은 현행 유지를 원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혹시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김영환 위원님.

○김영환 위원 차관님, 합리적인 회수 노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외상매출채권이 발생하면 모든 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경제적 이해관계에 의해서 받으려고 하지, 그게 기본 아니에요? 저는 이 조문 자체가 이상한 것 같은데요. 외상매출채권이 발생을 하면 모든 기업활동을 하는 법인이나 개인이나 상관없이 이 경제적 이해관계를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이 전제가 되고 우리가 시장질서를 이해하는 거 아닌가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그런 일리도 있습니다만 이게 기본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돼야지만 대손을 떠는 겁니다.

○김영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민법상 3년이거든요. 그것을 저희가 특별히 2년으로 완화했는데 이것을 6개월까지 줄인다는 것은 무슨 특별한 뭐가 있어야 되는 게 있어서 좀 부담스럽다는 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김영환 위원 그래서 아까 합리적인 회수 노력이라고 해서 저는 이것 자체가 좀 의미가 없다.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그 부분은 실현하기가 어렵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박성훈 위원님 아까 손 드셨습니다.

○박성훈 위원 저는 양쪽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정상적으로 건전한 경영을 통해서 세금을 납부하려고 노력했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의 차별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도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차관님께서 85% 이상의 경우에는 털어 낼 수 있는, 또 다른 방식으로 해서 도움을 주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예, 단순경비율 처리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일영 위원님 발언 신청하셨습니다.

○정일영 위원 지금 얘기하고 있는 합리적인 회수 노력이 이루어졌을 것 범위 그 문제가 개정안 3호만 해당되는 거예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예, 3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러면 1·2·4호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1·2·4호는 현재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

○정일영 위원 그러면 시행령에 있는 것을 법으로 끌어올리고?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그런 취지가 녹아 있습니다.

○정일영 위원 3호만?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3호가 바뀌는 사안입니다.

○정일영 위원 3호만 새로 추가되는데……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예, 원래는 시행령에 2년으로 돼 있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러니까 6개월 동안 합리적인 회수 노력이 있느냐 판단, 그러니까 2년으로 놔두면 하다가 지쳐서 그냥 나가 떨어지더라도 2년 정도면 통념적으로 인정이 되는데 6개월은 조금 악용될 수가 있다 그거예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예. 현장은 2년 딱 끊어 버립니다.

○정일영 위원 세수, 조세 회피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이걸 6개월로 개정했을 때 세수가 얼마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커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추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정일영 위원 못 하겠지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예.

○정일영 위원 그래서 얘기인데 이것은 제가 볼 때 플러스마이너스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플러스 효과가…… 지금 소상공인, 개인사업자분들 다 어렵고 그리고 검토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폐업, 생존율 이런 거 보면 정책이라는 게 항상 플러스마이너스가 있는 건데 마이너스 부작용이 조금 있을 수도 있지만 긍정적인 측면이 더 큰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경부에서 지금 동의를 안 하신다고 그러면 조금 더 객관적인 연구나 데이터 그런 것을 빠른 시일 내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긍정적인 측면이 일단 크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안도걸 위원님 발언 신청하셨습니다.

○안도걸 위원 차관님께 여쭙게요.

대손처리를 언제할 거냐 지금 그 문제 아닌가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그렇습니다.

○안도걸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회계상으로는 어떻게 돼요? 세법상으로는 3년 이후, 일반 재무제표 만들고 할 때 있지 않습니까, 기업회계상으로는 지금 몇 년이예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일반 상법 3년……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일반법상 3년입니다.

○안도걸 위원 똑같은가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아니요, 3년인데 세법상으로 2년에 털 수 있게끔 해 주는

겁니다.

○안도걸 위원 상법이 이래 가지고 2년이다 이거지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예.

○안도걸 위원 그렇게 되는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지요. 세금을 안 내겠다는 게 아니고 빨리 세금을……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결손처리를 함으로써……

○안도걸 위원 결손처리를 좀 빨리하겠더라는 그거지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예, 결손처리를 해서……

○안도걸 위원 그러니까 미리, 감세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미리 당겨 받는 겁니다. 결손……

○안도걸 위원 미리 당겨 받는다는 거지요? 이게 그렇게 절박한 겁니까, 현장에서 보건대?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현장에서는 대손처리를 할 거냐, 대손충당금을 할 거냐 이런 거거든요. 지금 대손처리를 안 할 때는 대손충당금 제도가 있습니다. 일단은 대손충당금으로 달아 놔다가 대손이 확정되면 중국적으로 대손처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대손충당금 제도가 있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안은 대손충당금 제도가 있지만 그것보다는 대손처리를 빨리하게 해 줘서 확정적으로 해 줘라 이런……

○안도걸 위원 그러니까 대손충당금 되니까 자금 흐름이 조금 묶이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효과도 있기는 있을 것 같은데 여하튼 이게 그 정도로 절박하나? 소상공인들 이것만 보면 하겠지만 이걸 이렇게 해소해 줘야…… 경영상의 애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크게 있는데 해소가 될 수 있느냐.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그 부분이 제가 말씀드린 아주 영세한 소상공인이라면 이 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단순경비 처리로 85% 정도, 업종별로 90%도 있고 60%도 있습니다만 도·소매 같은 경우에 86%를 바로 떨어 줄 수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아주 아래층에 계시는 분들은 사실 이 제도가 활용될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수석전문위원님.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도덕적 해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걸 당겨 놓으면 회수 가능한 것도 안 하고 밀어 놓을 수 있다라고 말씀한 부분은 사실 회수하는 게 훨씬 이득이 크기 때문에, 회수 안 해서 대손처리하는 것은 세율에 따라 다르겠지만 15% 정도 이득인데 회수하면 전액을 회수하는 건데요.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가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은 좀 잘못된 지적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오기형 위원님.

○오기형 위원 저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수석전문위원님 자료 데이터 설명할 때 85%, 90% 터는 것에 대한 것을 같이 첨부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 빼고 이야기하니까 전문위원 보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다 포괄적으로 검토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좀 더 숙고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제도 정합성 측면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3년 한도가 있는 것을 소멸시효와 회계

제도 그다음에 세금제도, 차이가 발생하는 이런 제도를 계속 만들어 낼 거냐, 그런데 반대로는 내야 될 합리적인 또 사회적인 다른 이유가 있냐 이 설명을 해야만 그다음 변화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변화를 결정할 만한 이유가 충분한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보완설명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까 기존에 있는 85%, 90% 터는 것이 실제 작동된다면, 소상공인들이 빨리 6개월 안에, 1년 안에, 2년 안에 폐업을 하는 것들 때문에 그 사람들 중의 다수가 기존에 85% 터는 것의 실질적인 혜택을 받고 있다면 현실적 이슈가 아닐 거고 그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라고 분석이 된다면 논쟁을 한 번 더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소위원장 박수영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것 보니까 수석전문위원실에서도 검토가 좀 필요한 것 같고, 차관님 말씀하신 85% 그 제도가 정말 작동하고 있어서 다수가 그걸 이용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제도만 있는 것인지 하는 부분까지 검토해서 다음번에 한 번 더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참고로 단순경비 85% 터는 것은 전년도 매출 6000만 원 미만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6000만 원 미만만? 그러면 대상이 굉장히 작은 거네, 매출 6000만 원이면. 일단 알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조금 더 연구하고.

차관님, 재정부에서도 조금 더 깊이 연구를 해서, 지금 3년 돼 있는 게 2년 돼 있는데 이걸 1년으로 하자는 게 수석전문위원 의견이고 법안은 6개월 아닙니까? 그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을 수 없는지 다시 한번 연구해서 다음번에 다시 한번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22페이지입니다.

국세기본법 일부개정안, 세무조사 연기신청 사유에 부도·도산 우려 등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표로 보시면 더 정확하게 보일 것 같아서, 22페이지를 보시면 현행은 세무조사 연기 사유가, 신청요건이 천재지변으로 돼 있고요. 오른쪽을 보시면 좀 풀어 놨습니다, 천재지변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그다음에 현행은 천재지변 이외에는 다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우측에 보시면 개정안은 구체적으로 법에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를 명시했고 나머지는 대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23페이지 현황을 보시면 현행법에서는 천재지변 이외에는 세무조사 유예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데요.

시행령에서는 첫 번째 화재 등 재해로 인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두 번째 납세자 등의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세무조사가 곤란한 경우, 세 번째 장부, 증거서류가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 그다음에 이에 준하는 사유 등으로 규정돼 있어서 포괄적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24페이지 보시면, 결정사항 첫 번째는 현행 세무조사 유예요건이 천재지변으로만 돼 있는데 이걸 구체화하자는 내용인데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세무조사 유예 사유를 현행보다 구체화함으로써 적용 기준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요.

고려사항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에 따를 경우 재산에 대해서만 돼 있어서 인명피해나 공급망 붕괴 등 천재지변이 납세자에게 미치는 비재산적 손실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서 수정의견을 제시했는데요. 개정안은 재산에만 심각한 손실을 입은 경우인데 수정의견은 ‘천재지변으로 인해 인명·재산·공급망 등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로 비재산적인 것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25페이지, 두 번째는 부도·도산 위기 기업을 세무조사 연기신청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부분인데요.

개정안은 ‘사업에 현저한 손실 발생’,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 등의 신청 사유를 법률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첫째, 부도·도산 위기에 처한 기업을 세무조사 유예신청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경영위기에 처한 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둘째, 사업상 현저한 손실,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 등의 사유를 세무조사 연기 사유로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행정집행의 자의성을 축소하고 제도 예측가능성 및 법적 안정성 제고 효과를 기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조사·과세·징수 등 현재는 부도·도산 우려가 있는 경우 납부기한 연장만 허용하고 있는데 개정안과 같이 해당 제도와 조율해서 세무조사 단계에서도 보호장치를 도입함으로써 조사·과세·징수 전반에 걸쳐 세무 지원체계 구비가 가능할 것으로 보았고요.

넷째, 개정안에 의하더라도 조사제도의 중립성 및 과세 형평성은 유지가 가능한 걸로 보입니다. 이는 단지 기업이 신청할 수 있는 유예신청 요건이기 때문에, 실제 승인 여부는 세무 당국에서 결정할 재량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경영위기 여부나 탈세 시도 정황, 자산은닉 가능성, 국세 부과체척기간 도과 가능성 등의 구체적 판단요소는 개별 사안으로 과세 당국이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이 개정안을 적용하더라도 조사제도의 중립성 및 과세 형평은 현행 재량통제 구조 내에서 유지 가능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차관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잘 검토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천재지변과 관련해서는 문구를 좀 확장했는데 사실은 재산만 하면 저희들은 반대의견을 냈습니다만 수석전문위원의 수정안을 보면 동의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정안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현저한 손실과 부도·도산 우려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짚어 봤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볼 때는 세무조사를 강행하기보다는 이 기업이 좀 더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먼저 주는 것이 크게 보면 오히려 세수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동의로 의견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민규 의원님 안에 수석전문위원 수정안 내신 것 그렇게 해서 앞의 것 인명·

재산·공급망하고 뒤에는 재정부가 동의했고 신청주의니까 신청하는 것으로 해서 이것은 잠정 합의한 것으로 결정하고 나중에 최종 의결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29페이지 조특법,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소득공제 및 배당소득 과세특례 신설에 대한 개정안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이건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해야 될 쟁점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쟁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동 과세특례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이 고소득 자산가에 집중된다는 지적이 있어 가지고 첫 번째 소득공제의 경우에는 소득요건을 규정하거나 소득공제율 하향 조정 또는 소득수준에 따른 소득공제율 차등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소득공제에 대한 소득요건 규정의 경우에는 국민성장펀드와 같이 최대 40%는 되게 이례적인 경우인데 40%의 혜택을 부여한 소득공제 장기펀드 및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총급여 5000만 원 이하라는 소득요건이 존재한 바 있고요.

그다음에 37페이지 소득공제율 하향 조정 또는 소득수준에 따른 소득공제율 차등 적용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드리면, 소득공제 시 소득요건이 없는 장기주식형 펀드 및 코스닥벤처펀드의 경우에는 소득공제율이 최대 20%고 코스닥벤처펀드의 경우는 10% 수준이라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저희가 2000만 원 투자 시 총급여액·소득공제율별 소득공제 감면세액을 비교해 봤는데요, 표를 보시면 소득공제율이 40%입니다. 총급여가 5000만 원인 사람은 감면세액이 120만 원이고 총급여가 1억 원인 사람은 192만 원이고 총급여가 3억 원인 사람은 304만 원으로 소득수준에 따라서 감면세액 격차가 큰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동일한 소득공제율을 적용할 경우에 총급여액이 많은 고소득자일수록 감면세액이 더욱 커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소득수준에 따라 소득공제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예시로 2000만 원 투자할 때 표를 보시면 총급여 5000만 원인 자에 40%를 적용하면 감면세액이 120만 원, 총급여가 1억인 자에 30%를 적용하면 144만 원, 3억인 자에 대해서 소득공제율 20%를 적용하면 152만 원으로 소득구간에 따라서 공제율을 달리할 경우에는 감면세액이 비슷해진다는 데이터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요.

두 번째, 연령요건 규정은 현행 ISA와 같이 19세 이상 거주자 또는 15세 이상 근로소득자라는 점을 참고해서 연령요건을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고요.

세 번째, 국민성장펀드 요건 구체화에 대해서는 현행은 대령으로 다 포괄 위임이 돼 있기 때문에 주목적 투자 대상을 산은법 29조의7제2항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업 및 첨단전략산업관련기업으로 구체화하는 방안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기타 체계·자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차관님, 정부 측 의견 말씀하십시오.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소득공제와 관련된 세 가지…… 연령 그리고 투자 어디로

살 거냐에 대한 부분인데 뒤에 있는 두 가지, 연령요건 그건 ISA 기준으로 도입하는 것을 저희가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장펀드 요건 구체화도 저희가 수용하겠습니다. 그래서 2·3번은 저희가 수용의견을 드리고요.

1번 소득공제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고민이 좀 더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안으로는 펀드를 할 때 서민용으로 별도로 물량을 배분해 가지고 그분들은 우선적으로 이 펀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줌으로써 서민들에 대해서 먼저 기회를 주는 걸로 저희가 대안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소위원장 박수영 20% 한다고 그랬나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예, 일정 물량인데 저희는 현재 20%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를 부대의견에 담아 주시면 서민들에게 먼저 접근성을 강화함으로써 이런 부분을 완화할까 하는 생각을 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말씀 준 거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저희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있으나 지난번에 충분히 말씀드렸는데 필요하다면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위원님들 질의하실 시간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환 위원님 하시겠어요?

○김영환 위원 근본적인 질문인데요 사실은 이 조세감면 쪽이 소득불평등 효과를 더욱 극대화시킵니다. 차라리 어떻게 보면 재정지원으로 매칭 제도가 훨씬 나아요. 국민성장펀드에 국민 성장이 없다니깐요. 고소득 성장만 있어요. 저는 근본적으로 재경부가 새로운 터닝포인트를 좀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닌가.

조세감면 지금 80조잖아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예.

○김영환 위원 지금 그것 일일이 조사하기로 돼 있잖아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예,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영환 위원 저는 연말 되면 이것 싹 나올 거라고 봐요, 지금 현재의 조세감면 제도가 어느 정도 불평등에 기여하는지. 계속 하나 더 었는 거예요. 나올 때마다 계속 었어요. 고소득자를 위한 조세감면이 계속 었어져요. 이렇게 역진적인……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 조세감면 추계가 된다면 그대로 저소득층 분화해서 매칭해 주는 게 소득불평등 개선에 훨씬 효과가 있다고 봐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제가 한말씀드리면요 기본적으로 그런 측면을 감안해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여기에 가입을 못 하도록 일단은 막아 뒀습니다. 그래서 금소 대상자를 뺐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김영환 위원 아니, 그래도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수석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상품들은……

○김영환 위원 연간 2000만 원 버는 사람이 몇 집입니까? 연간 2000만 원 금융소득 버는 사람이 몇 집이에요? 원금으로 따지면 이자배당소득 2000만 원 이상이 몇 집이에요? 몇 퍼센트예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조만희 저희들 통계가 한 43만 명 정도 됩니다.

○김영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융소득자 전체 5000만 명에서 43만 명이에요, 그렇게

버는 사람들이.

저는 이상입니다. 제 의견 얘기했고요.

○소위원장 박수영 정일영 위원님 발언 신청하셨습니다.

○정일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차관님, 아까 설명하다가 끝에 우물우물 시간 없어서 그냥 끝낸 것 같은데 서민들한테 20%를 우선 한다고 그랬어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예, 할당. 물량 배정을 하겠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렇게 했을 때 1번 항목에 대한 걱정을 좀 누그러뜨린다 뭐 그런 얘기 아니에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예, 맞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것 좀 설명을 해 보세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예를 들어서 할당을 하지 않으면 우선적으로 빨리 가 가지고 물량이 다 끝나 버리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가 6000억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기 소진됐을 때 나중에 정말로 필요한 서민들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별도의 할당을 줌으로써 따로 만드는데……

○정일영 위원 그러니까 서민들 쿼터를 만들어서 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게 하니까……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예, 그분들만 따로 모으고 있습니다.

○정일영 위원 세금감면 이런 거와 유사한 효과가 있다, 소득적인 측면에서?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예, 소득공제는 어차피 3000만 원까지 40% 공제하는 건 똑같거든요.

○정일영 위원 그것도 일리가 있는 것 같네.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하람 위원님.

○천하람 위원 그런데 서민 쿼터를 뭐도 서민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세금혜택 드려 봐야 실질적 혜택이 별로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애초에 소득세를 많이 내고 계실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차관님?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이 상품에 가입함으로써 이 상품이 얻는 수익을 공유하는 게 가장 첫 번째고요. 거기에 추가로 세제혜택이 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하람 위원 아니, 그런데 수익을 공유하는 것은 서민이든 아니면 돈 많은 분들이든 이 상품에서 수익 나오는 거야 매한가지일 거고.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예, 그래서 할당해서 그걸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잡아 주겠다는 게 쿼터 이야기입니다.

○천하람 위원 그러니까 기회는 잡아 주는 건데 지금 수석전문위원 말씀하신 과세의 역진성 같은 문제, 소득이 많을수록 혜택이 너무 심하게 많아지는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약간 일관성의 문제인 게 글썽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든 민주당이든 고소득층에 대해서 더 큰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 굉장히 우려를 많이 갖고 있는 태도를 즉 보여 왔는데 유독 국민성장펀드

에 대해서, 이게 대통령 관심사항이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것에 대해서만 이렇게 소득구간에 안 맞는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서 너무 그냥 쉽게쉽게 넘어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수석전문위원 검토같이 격차를 좀 줄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야지 그런 것 없이 그냥 20%는 서민에게 할당했으니까 문제없다, 그것 너무 안일한 거 아니에요?

○소위원장 박수영 박성훈 위원님.

○박성훈 위원 근본적으로 저는 국민성장펀드 자체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인 시각이고요. 여러 가지를 보더라도 개인의 수익을 목표로 하는 제도가 아니라 정부가 정책적으로 투자하고자 하는 분야에 국민 세금을 몰아주는 그런 부정적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정책목표가 첨단전략산업 육성 성과를 국민과 공유를 한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명분이고 실질적으로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 쪽으로 활용되는 게 아니라 정부가 하고자 하는 정책목표를 위해서 동원하는 그런 기제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특히 세금으로 손실보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정부가 투자를 하지 않는 일반 국민들의 세금으로 그렇지 않은 국민성장펀드에 투자하는 사람들의 손실을 메워 주는, 제가 제도적 구조를 보게 되니까 정부가 후순위 투자자로서 손실의 20%까지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재정에서 지원되게 했습니다. 작년에 국회에서 의결해 주셨습니다.

○박성훈 위원 그런 구조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들, 소득불평등 문제 그리고 이걸 통해서 혜택이 결국 귀속되는 분야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종합적인 고민이 저는 아직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안도걸 의원님께서 좋은 법안을 발의하셨지만 근본적인 부분에 대한 의문점 그리고 고소득자들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해소책이 완벽히 준비되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혹시 발의하신 안도걸 위원님.

○안도걸 위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여러 문제들이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산·서민층의 자산 형성을 위한 이러한, 또 세제지원은 따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고.

지금 미래혁신산업을 두고 국가 간에 각축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좀 주도적으로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국민적 자금을 이 분야에 유도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동산에 몰려 있는 자금들을 기업투자 쪽으로 하고 또 우리 국민들의 금융자산을 축적시켜 주는 그러한 역할을 좀 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미래혁신산업이 만들어지고 또 우량한 기업들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한다면 거기에서 충분한 세금을 내지 않겠습니까? 성장을 통한 세금이 들어오면 그것을 복지라든지 중산·서민층을 위한 쪽으로 쓸 수가 있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미래성장을 위한 국가적인 재원을 만드는 거다라는 거고. 그런데 가능하면 우리 중산·서민층들이 이 혜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수혜의 폭이랄까요, 이런 걸 보더라도 우리가 현재 운용하고 있는 유사한 펀드에 대한 세제지원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요. 다만 있다고 한다면 통상 납입금에 대한

소득공제고 나중에 투자소득이 생겼을 때 그에 대한 배당소득 그 두 가지를 양립시킨다는 것뿐이거든요.

그리고 형평 문제를 이야기한다지만 지금 세 가지의 장치를 두고 있거든요. 소득공제 한도가 지금 있지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예, 있습니다.

○안도걸 위원 1800만 원까지 있고. 그리고 또 그 공제도 소득계층에 따라서 40~10까지 이렇게 분배되고. 두 번째가 이 공제를 포함해서 전체적인 금융투자에 대한 공제가 2500만 원까지, 그렇지요? 한도를 또 하나 묶어 놔줬어요. 그리고 세 번째, 금융소득이 2500만 원 이상 되는 고자산가에 대해서는 배제. 지금 이 세 가지를 묶어 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통상 생각하는 그리고 여타 일반적인 투자펀드에서 지원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형평을 더 맞춘 거라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보완할 수 있는, 저는 어떻게 보면 약간 과도해서 이 돈이 제대로 모아질 수 있을까라고 걱정될 정도가 아니냐 싶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차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예,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기본적으로 세 가지 말씀하신 거 점감구조로 만들어 놔고 전체 소득공제 한도 내에 포함해서 별도로 빠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같이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금소 대상자를 제외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펀드가 있습니다.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제를 주는 것 중에 보면 엔젤투자가 있습니다. 벤처에 대한 투자를 할 때 소득공제를 저희가 100%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어떤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소득공제를 좀 두더라도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서민의 저축 지원을 한다면 좀 그런 측면이 있겠지만 이건 정책적 목적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소득공제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향유되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공제율이 굉장히 낮은 펀드의 경우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라도 가입이 가능한 펀드였다는 걸 같이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2번·3번 쟁점에 관해서는 의견이 정부 측하고 수석전문위원 검토가 일치했고 1번 쟁점에 관해서는 위원님들 중에 약간 걱정된다는 의견도 일부 계셨는데 간사님들 간에 소소위에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서……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농어촌특별세 5번은 같이 묶여 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47페이지, 온누리상품권 추가 부분입니다.

48페이지도 지난번에 얘기했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개정안은 기업업 무추진비 손금산입 특례 대상에 온누리상품권을 추가하고 손금산입 한도를 상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50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의 유사성을 고려할 때 기업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지역상점가 활성화 및 소상공인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서 현행은 지역사랑상품권만 기업업추비 손금산입 특례 대상에 포함돼 있는데 온누리상품권도 취지나 이런 부분이 유사하기 때문에 지역사랑상품권과 같이 온누리상품권도 손금산입 특례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추가 손금 인정은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전통시장 지출분과 중복성이 있다든지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입장입니다마는 저희가 중기부랑 계속 협의를 해 왔습니다. 현재 중기부에서 기본적으로 제도개편을 추진할 계획이 있다는 점이 하나 있었구요.

두 번째로는 제도개편에 앞서서 원래는 온누리상품권에 대해서 연매출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해서 6월 달에 시행이 됩니다만 연매출 30억 원 이하로 제한하기로 중기부에서 방침을 바꿨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하고 동일한 요건이 됩니다, 30억 이하로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할 때 오늘 만약에 소위에서 논의해 주시면 필요하다면 이 부분은 저희가 수용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안도걸 위원님.

○안도걸 위원 수용이 가능하다는 게 무슨 말씀이시지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필요하다면, 논의해 주시면 저희가 따르겠다는 말씀입니다.

○안도걸 위원 이렇게 바꾸겠다고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예, 수용 가능한 부분으로.

○안도걸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현재는 지역사랑상품권만 추가 손금이 돼 있는데 온누리상품권도……

○안도걸 위원 추가하겠단.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예, 추가할 수……

○안도걸 위원 법안에 지역사랑상품권은 빼고 온누리상품권으로 대체하겠단 그것 아닌가요?

○소위원장 박수영 아니, 아니야.

○정일영 위원 아니, 다.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아닙니다.

○안도걸 위원 둘 다? 플러스로 해 가지고, 통합해 가지고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예.

○안도걸 위원 그런데 지금 지역사랑상품권하고 온누리상품권에 약간의 차등을 두고 있는 것은 범용성이랄까요, 이런 걸로 봐서 지역사랑상품권이 훨씬 더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는 거잖아요. 가맹점 수 보면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에 한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14만 개 정도 돼요. 그런데 지역사랑상품권은 이게 다 열려 있기 때문에 한 266만 곳 등

등 하고, 전체 활용 규모도 보면 지역사랑상품권이 한 24조 그리고 온누리상품권이 5조, 통상적으로 이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이라든가 기존의 어떤 통용성에 있어서 상당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차별이 돼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잘 검토를 하십시오.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예, 그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박성훈 위원님.

○박성훈 위원 차관님, 온누리상품권하고 지역사랑상품권을 앞으로는 통합해서 운영할 방침인가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그 부분은 중기부에서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방침 자체가 어떤 쪽인지 방향성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현재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온누리상품권 효율화를 위해서 연구용역을 앞으로 발주하는데 통폐합에 대해서는 무관하다라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박성훈 위원 박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기업의 선택권을 존중하고 지역사랑상품권이든 온누리상품권이든 결국 소상공인 생계안정에 도움이 되는 제도라는 근본적인 취지의 동일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제도개선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연매출 30억 이하, 저는 재경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결론 내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안도걸 위원님, 약간 레저베이션(reservation)이 있었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안도걸 위원 분명히 좀 해 주십시오. 지역사랑상품권에다가 온누리상품권을 추가하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예, 추가 부분입니다.

○안도걸 위원 그리고 두 시스템을 통합하는 것은……

○소위원장 박수영 앞으로 할 수도 있다?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통합이 아니고 제도개편을 추진해 보겠다고 중기부에서 하고 있고요. 우선적으로는 매출액은 제한을 걸어서 갖추겠다, 나머지 부분은 현재 아직 미정입니다.

○안도걸 위원 그러니까요. 30억 한도 그걸 전제로?
알겠습니다.

○정일영 위원 간단하게 하나……

○소위원장 박수영 정일영 위원님.

○정일영 위원 찬성인데 이게 시행일이 언제입니까, 이렇게 됐을 때?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말씀 주신 것처럼,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만약 오늘 논의에서 결론 내 주신다면 시행일은 이미 지났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일영 위원 공포한 날로부터?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예.

○정일영 위원 재경부, 그게 가능해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이번에 여기서 고쳐 주시면……

○정일영 위원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이?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예, 그건 가능합니다.

○정일영 위원 가능합니다까?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김영환 위원님.

○김영환 위원 차관님, 재경부가 충분히 검토하셨을 것 같은데 온누리상품권의 이익을 주는 이런 효과, 나중에 결과가…… 예를 들면 인기 있는 지역이나 또 특정한 지역에 몰려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 결국에는 지역사랑상품권은 그 지역에서 사용되는 건데 온누리상품권은 전국으로 사용되는 거다 보니까 어느 특정 관광지 유명한 곳에서만 부익부빈익빈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는데 그런 것은 충분히 검토하셨어요?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그 부분은 중기부 제도개편하고 같이 함께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추가 질의가 없으시면 소소위를 해야 돼서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10분 후에 모여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하고 소소위를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박수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6항 및 제7항,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의결하면서……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위원장님, 적용례 부분을 조정할 게 한 가지 있어 가지고요.

48페이지 보시면……

○소위원장 박수영 국세기본법?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아니요, 조세특례법의 온누리상품권 추가하는 부분 48페이지 보시면 시행일은 25년 1월 1일 돼 있는데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바꿨는데요. 적용례가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하면 연결납세의 경우는 4월 말에 납세를 신고하기 때문에 25년분까지 포함될 우려가 있으니까 적용례를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올해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바꾸는 게 적절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정을……

○재정경제부제1차관 이형일 정부도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그래요, 좋습니다.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하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대안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6항 및 제7항,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의결하면서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대의견(안)은 위원님들 책상에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부대의견안 보시고.

부대의견(안)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아까 합의한 내용이긴 합니다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대의견도 그대로 게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특별세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 의결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자구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고 이형일 차관님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최병권 수석님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들 그리고 보좌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출석 위원(11인)

김영환 박성훈 박수영 안도걸 오기형 유상범 윤영석 정일영 정태호 천하람
최기상

○청가 위원(1인)

최은석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재정경제부

제1차관 이형일

세제실장 조만희

소득법인세정책관 박흥기

관세정책관 최재영

관세청

조사국장 김정

금융위원회

국민성장펀드추진단장 손영채

산업통상부

기술안보과장 유은